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3가단15338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9. 3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86,702,109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,704,492원 및 그중 12,564,281원에 대하여 2024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0. 11. 26.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와 벤츠 e250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,013,500원, 지연배상금율 24%로 정하여 자동차리스 약정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86,702,109원을 한도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리스료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4. 6. 19. 현재 채권 잔액이 14,704,492원(= 원금 12,564,281원 + 연체이자 등 2,140,211원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최고액인 86,702,109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,704,492원 및 그중 원금 12,564,281원에 대하여 2024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손화정